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2. 20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12. 13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2. 12. 13
- 라. 상정일자 : 2002. 12. 20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가. 개정이유

-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을 일부 시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정비와
- 폐지된 사무, 기 이관된 사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되는 사무 정비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공연신고, 광고물 설치 및 허가사항
-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 시도 이하의 도로점용 허가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신고 및 등록처리 사항등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공연신고,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 단속
- 세무업무 전반(지방세 미과세증명, 완납증명발급 업무 제외)
- 건축업무등

◎ 업무폐지, 기 이관,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의 정비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읍면근무 8급내지 9급공무원 정원내에서의 신규 임용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 통·리 개발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 비료구입권 발급등 산업분야 사무
-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 자가용 도살(돼지에 한함) 신고등 축산분야 사무
- 임업자금 용자대상자 선정등 산림분야 사무
-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사용허가등 건설분야 사무등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규정등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 부재자사실확인등 민원분야
- 농가·비농가 증명
- 수도재배관리 및 선전계몽
- 상전 실태조사등 비현실적인 업무등

◎ 기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근거 규정 신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업무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량 경감과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의 조정등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 것임.
- 주요 검토내용은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읍면사무소에서 공연 신고업무등 12건, 동사무소에서 14건 등이며
 - 이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타 법규의 적용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 그리고 업무자체가 폐지된 사무등 총 75건(읍면 54건, 동 21건)에 대하여는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 위임근거 없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등 4건의 사무는 새로이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임.
- 참고로 그동안 각종 규칙·훈령·지시·지침 등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사무(읍·면 : 295건, 동 : 364건)에 대하여도 금번에 본청으로 이관조치 할 계획으로 이럴 경우 존치하는 사무는 읍면은 53%, 동은 39%로서 읍면동 업무가 상당히 경감되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93조와 제95조 등을 종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등 본안과 같이 개정 하여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㉔
----------	---

제출년월일 : 2002. 12. 13

제 출 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을 일부 시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정비와
- 폐지된 사무, 기 이관된 사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근거 마련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 개정코자함.

□ 주요골자

1.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되는 사무 정비

【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공연신고, 광고물 설치 및 허가사항
-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 시도 이하의 도로점용 허가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신고 및 등록처리 사항등을 폐지

【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공연신고, 관광지 불법 시설물 참상인 단속
- 세무업무 전반(지방세 미과세증명, 완납증명발급 업무 제외)
- 건축업무를 폐지

2. 업무폐지, 기 이관,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의 정비

【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읍면근무 8급내지 9급공무원 정원내에서의 신규 임용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 통·리 개발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 비료구입권 발급등 산업분야 사무
-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 자가용 도살(돼지에 한함) 신고등 축산분야 사무
- 임업자금 융자대상자 선정등 산림분야 사무
-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사용허가등 건설분야 사무등을 폐지

【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 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규정등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 부재자사실확인등 민원분야
- 농가·비농가 증명
- 수도재배관리 및 선전계몽
- 상전 실태조사등 비현실적인 업무를 폐지

3. 기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근거 규정 신설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업무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조례 개정사유 : 불입 참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3조, 제95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행정자치부, 2001. 6. 29)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산시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분 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
세 무 분 야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시세 징수금의 징수	지방세법 제177조
	3	주민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신고처리	제173조, 제215조, 제250조
	4	납세관리인 지정	지방세법 제37조 제3항 및 시세조례 제31조
	5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 제9조
	6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7	시세100,000원 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
	8	시세에 부과된 국세의 징수	교육세법 제1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9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재산세 관련대장 나. 농업소득세 관련대장 다.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라. 사업소세 관련대장	
	10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10조, 시세조례제43조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무 분 야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라. 선박에 대한 신고 마. 농지의 변동 신고 바. 토지에 대한 신고 사.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아.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시세조례 제28조 시세조례 제29조 시세조례 제32조 시세조례 제33조 시세조례 제47조 시세조례 제79조 시세조례 제99조 시세조례 제100조
	12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제4조
회 계 분 야	1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다만, 재산평가액1건당 5,000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 제곱미터 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제31조
민방위 분 야	1	재해의 응급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 39조
사 회 분 야	1	묘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묘지납골 및 매장 신고 나. 묘지개장 신고 다. 공설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제2조
환 경 분 야	1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2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3	폐기물 불법행위의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4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수리 및 유지 관리 지도감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제9조, 제10조
	5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폐기물관리법 30조의3 동 시행 규칙 24조(신설)
산 림 분 야	1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
건 축 분 야	1	건축신고의 접수처리	건축법 제71조, 건축법시행령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	제117조 제4항(신설)
	3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처리등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분 야	1 2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 소독 업무 대마취급자 허가, 폐지 및 대마의 운반,보관, 감시등 대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방법 제4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내지제14조, 제23조

□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분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
세무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민원분야	1	인감증명법에 의한 일체의 권한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2조
	2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환경분야	1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2	폐기물 불법 행위의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7조
	3	가로 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회분야	1	묘지납골 및 매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2	묘지개장 신고	"
	3	공설묘지 사용허가 및 관리	서산시묘지사용조례 제2조
산업분야	1	보조 농기계 운영관리	
	2	농기구 보관관리	

서산시 읍·면·동 사무위임조례 개정 사유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 문화공보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공연신고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2. 총무분야(자치행정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읍·면근무 8급 내지 9급 지방공무원 정원내에서의 신규임용	1. 시장의 처리 사무로 삭제
2. 동 정기승급	2. 상동
3. 동 휴직발령	3. 상동
4. 동 휴직기간 만료자의 복직발령	4. 상동
5. 정원내에서의 고용원 임용	5. 폐지된 제도로 삭제
6. 읍·과장 및 읍·면동계장 보직	6. 현재 읍·면에 과장 및 계장 직위가 없으므로 삭제
7. 읍·면장의 관내출장	7.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서산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의거 근무하면 되므로 삭제
8.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정	8.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읍·면·동장의 처리 사무로 삭제 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9. 동 사무의 인계인수	9. 소속직원에 대한 사무의 인계인수는 서산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처리하면 되므로 삭제
10. 동 관내 출장명령 등 복명서 처리	10. 제8호와 동일하므로 삭제

<p>11. 동 당직근무 명령</p>	<p>11. 서산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에 정인 7일 전까지 익일 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장)가 발령하고 소속담당관실 및 실,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2. 동 특근명령</p>	<p>12. 제8호와 동일하므로 삭제</p>
<p>13. 동 복무에 관한 청원제서의 처리</p>	<p>13.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읍·면장 처리 사무로 삭제</p>
<p>14. 동 신원보증서 징취</p>	<p>14. 폐지된 제도로 삭제</p>
<p>15. 읍·면 주재직원에 대한 복무감독</p>	<p>15.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및 ③ (생략)</p>
<p>16.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의 위·해촉</p>	<p>16. 서산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 제3조제 2호의 규정에 의거 삭제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생략) 2. 위원은 관내 식정에 밝고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덕망 있는 자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p>
<p>17. 통·리개발위원회 위원의 위·해촉</p>	<p>17. 서산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에서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p>
<p>18. 리 행정지도감독</p>	<p>18. 서산시리·통장임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 제11조(임무) 리·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내지 9. (생략)</p>

<p>19. 문서의 보관 및 폐기(다만, 폐기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p> <p>20. 관보타전 의뢰원 처리</p> <p>21. 인장업의 신고사무</p> <p>22.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p>	<p>19.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문서보관 및 폐기하면 되므로 삭제</p> <p>제28조(문서의 보존등) ①문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1. 내지 4. (생략)</p> <p>② 및 ③ (생략)</p> <p>제31조(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보존기간이 3년이하인 문서를 제외한다) 및 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의 심의(보존기간 20년 또는 30년인 문서에 한한다)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p> <p>② 내지 ⑤ (생략)</p> <p>20. 폐지된 제도로 삭제</p> <p>21. 상동</p> <p>22. 존치</p>
---	---

3. 사회진흥분야(문화 공보 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p>1. 광고물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p>	<p>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p>

4. 세무분야

사 부 명	개 정 사 유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1. 존치
2. 시세 징수금의 징수	2. 존치
3. 주민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신고처리	3. 존치(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
4. 납세관리인 지정	4. 존치
5.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읍면동 신청분에 한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개정
6. 지방세 완납 증명 발급 (단, 읍면동 신청분에 한함)	6.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개정
7. 시세100,000원 미만 결손처분	7. 존치
8. 시세에 부과된 국세의 징수	8. 존치.
9.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재산세 관련대장 나. 농지세 관련대장 다.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라. 사업소세 관련대장	9. 시세와 관련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존치 나. 존치(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 다. 존치 라. 존치
10.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10. 존치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 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라. 선박에 대한 신고 마. 농지의 변동 신고 바. 토지에 대한 신고 사.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아.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 처리 가. 존치 나. 존치 다. 존치 라. 존치 마. 존치 바. 존치 사. 존치 아. 존치
12.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12. 존치

5. 회계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 명령 2.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3.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4. 지정 공공시설과 임대차 계약(단, 시장의 사 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사유 잡종재산 대부계약(다만, 재산평가액 1 건당 5,000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산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읍면장 처리 사무로 삭제 2. 상동 3.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고, 또한 현재 개별 조례에 의거 권한이 위임된 공공시설물 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기 삭제 4. 제3호와 동일 5. 존치

6. 민방위 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일반교육 제외) 2. 재해의 응급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처리 사무로 삭제 2. 존치 <p>제39조(응급조치)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 에는 지체없이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p>

7. 사회분야(사회여성복지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p>1. 행여사망자의 통보</p> <p>2. 묘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묘지 매장 신고 나. 묘지 납골 및 화장신고 다. 묘지 개장 신고 라. 분묘 이장 신고 마. 공설묘지 사용허가 바. 공설묘지의 관리</p> <p>3. 유기장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유기장 영업의 휴업신고 다. 유기장 영업의 폐업신고 라. 유기장 재개업 신고</p>	<p>1. 위임 근거 불확실 삭제(상식적인 업무처리 사항임)</p> <p>2. 묘지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존치(“묘지납골및매장신고”로개정) 나. 서산시에서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화장신고는 삭제 다. 존치 라. 폐지사무로 삭제 마. 바. 존치 (“공설묘지사용허가 및 관리”로 개정)</p> <p>3. 기 이관 사무로(게입장으로 변경) 삭제</p>

8. 환경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가로청소	1. 법률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존치)
2. 대형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	2.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권한의 위임)에 규정되어 있기 삭제
3. 폐기물불법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3. 과태료부과는 제2호와 동일하기 삭제
4.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수리(단,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건축신고사항의 정화조에 한함)	4. 존치 제117조(권한의 위임)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5. 정화조 유지, 관리 지도감독	5. 존치
6.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6. 존치

9. 산업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비료 구입권 발급	1. 폐지된 제도로 삭제
2. 농약의 발급	2. 상동
3. 수도요금 공동방제	3. 지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
4. 이동농협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4. 폐지된 제도로 삭제
5. 수도 재배관리 및 선전계몽 시유농지제류 관리	5. 지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므로 삭제 업무 불명 삭제
6. 상전실태 조사	6. 폐지된 제도로 삭제
7. 대여양곡 대부 및 상환보관 관리	7. 상동

10. 지역경제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신고	<p>1.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p> <p>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선임) ①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11. 축산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p>1. 자가용 도살(돼지에 한함)신고</p> <p>2. 사유한우(종축우)의 대부 및 관리</p> <p>3. 자돈의 관리</p>	<p>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로 삭제</p> <p>제4조(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을 제1항의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업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도서·벽지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p> <p>2. 폐지된 업무로 삭제</p> <p>3. 상동</p>

12. 산림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업자금 용자대상자 선정 2. 임야의 임목벌채 신고 3. 산림계에 대한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와 보고 4. 입산허가 5. 입산연료 채취사업 신고 6. 임야의 입산불 반출 확인용 검인찍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처리 사무로 삭제 2. 폐지된 업무로 삭제 3. 폐지된 업무로 삭제 4. 법령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 신고"로 개정(존치) 5. 폐지된 업무로 삭제 6. 상동

13. 수도 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급수(사용)의 허가 2. 동 사용허가의 취소 3. 동 사용료의 부과 4. 동 사용료의 징수 5.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및 배수지의 유지관리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읍·면에 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2. 상동 3. 상동 4. 상동 5. 상동

14. 건설분야

사 부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공사감독복무규정에 의한 공사현장감독 공무원의 복무단속 2.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사용허가 3. 동 허가의 취소 4. 시도 이하의 도로부지 점용허가 5. 도선료의 징수 8. 관내 국도 지방도의 유지 수선 9. 도선장의 운영 및 관리 10. 서산시 농지개량 조합구역의 농지개량계의 조직, 운영,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경비부과 및 적립금 나. 시설부지 등기 다.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 라. 시설의 점검 및 복구 마. 농지개량계의 해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거법령 불명확 및 서산시시설공사업무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이 책임하에 감독하여야 하므로 삭제 2. 서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읍·면장 처리 사무로 삭제 3. 제2호와 동일하므로 삭제 4.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5. 해당 없는 사무로 삭제 8. 시장 사무로 삭제 9. 해당 없는 사무로 삭제 1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 도시사의 사무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규칙으로 규정함이 타당 함 第43條 (수리계) ①市·道知事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의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農業基盤施設의 利用者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組織·운영하고 農業基盤造成의 유지·관리업무를 委託할 수 있다.

15. 건축분야

사 부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읍관내 100㎡ 이하 건축물허가 처리권 (단 철근콘크리트, 철근조, 콘크리트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신설) 제117조(권한의 위임)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16. 보건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p>1. 방역소독약품의 수불 및 취약지 방역소독업무</p> <p>2.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 음 사항. 다만, 의료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가.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제신고와 등록처리 나.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다. 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환자 및 환가처리 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토록 조치</p>	<p>1. 존치</p> <p>2.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p> <p>가. 상동 나. 시장 처리 사무로 삭제 다.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라.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p>
<p>3. 대마취급자 허가 4. 대마취급허가사항 변경 5. 대마취급자의 폐지 6. 대마취급자의 취소 7. 대마재배 보고처리 8. 대마업 폐기 보고처리 9. 대마의 감시</p>	<p>3. 존치 4. 존치 5. 존치 6. 존치 7. 존치 8. 존치 9. 존치</p>

□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1. 문화공보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공연신고 2. 관광지 불법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2. 상동

2. 총무분야(자치행정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장도 가능	1. 존치
2. 소속공무원의 사무분담규정	2.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한 읍·면·동장의 처리 사무로 삭제
3. 소속공무원 관내출장 및 공문서 처리	3. 상동
4. 동행정 지도감독	4. 상동
5.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 처리	5.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처리하면 되므로 삭제
6.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처리(다만 회계공무원은 제외)	6. 서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처리하면 되므로 삭제
7. 고용원의 임용	7. 폐지된 업무로 삭제
8. 임시직 공무원의 임용	8. 서산시정원의 인력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면 되므로 삭제
9. 동장의 관내 출장	9.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서산시공무원근무규칙에 의거 근무하면 되므로 삭제
10. 당직 및 특근명령	10. 서산시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11. 문서 보관 및 폐기. 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문서보관 및 폐기 하면 되므로 삭제

3. 세무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2. 시세 징수금의 징수	2. 상동
3. 농지세 신고 처리	3. 상동
4. 납세 관리인 지정	4. 상동
5.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동지역 신청분에 한함)	5.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개정 (단서규정 삭제)
6. 지방세 완납 증명 발급 (단 동지역 신청분에 한함)	6. "지방세 납세 증명"으로 개정 (단서규정 삭제)
7. 시세 100,000원 미만 결손처분	7.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8.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8. 상동
9. 시세에 관련된 다음의 대장 비치 및 정리 가. 농지세 관련대장	9. 상동
10.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10. 상동
11. 시세 조례에 의한 신고 규정중 다음의 신고 처리 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 나. 농지의 변동 신고	11. 상동
12.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단 시장의 사전 승인)	12. 상동

4. 회계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공사집행	1.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
2. 배부 예산범위 안에서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2. 상 동
3.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3. 상 동

5. 시민분야(민원 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법에 규정된 인감증명사무중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 2. 부재자 사실 확인 3. 생모자 사실 확인 4. 가족자가 사육사실 확인 5.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법에 의한 일체의 권한” 으로 개정 (존치) 2. 동지역의 호적에 의한 부재자 사실확인 은 발 급할 수 없기 삭제 3. 사실확인발급지침 이외의 업무이기 삭제 4. 존치 5. 폐지된 제도로 삭제

6. 환경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형폐기물의 신고수리 및 수수료 징수 2. 폐기물 불법행위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3.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4. 가로 청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권한의 위임)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2. 과태료부과징수는 1호와 동일하기 삭제 3. 존치 4. 존치

7. 가정복지분야(사회여성복지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어린이놀이터 관리 2. 매화장 신고 및 개장신고 가. 이장신고 나. 공설묘지 사용 허가 및 관리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 2. 서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화장신고는 삭제("묘지납골 및 매장신고"로 개정) · 폐지된 사무로 삭제 · 존치

8. 산업분야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농가·비농가 증명 2. 보조 농기구 운영관리 3. 농기구 보관관리 4. 수도재배 관리 및 선전계몽 5. 상전실태조사	1. 현행 폐지된 제도로 삭제 2. 존치 3. 존치 4. 별도규정 불필요 삭제 5. 폐지된 제도로 삭제

9. 도시분야(건축)

사 무 명	개 정 사 유
1. 50m ² 미만의 건축신고(허가)처리	1. 기능전환 업무이관 삭제